■ EU, 폐자동차 유해폐기물로 분류

○ 수입/수출 혹은 EU 권역 내에서 처리되는 폐자동차는 2002년부터 유해폐기물로 분류될 것이 확실시 됨

- 폐자동차의 잔류 윤활유, 브레이크 오일, 납 배터리를 분리, 제거하는 등의 사전처리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일반 폐기물로 분류됨
  - 지난 해에 유럽집행위원회가 제안하였던 계획은 회원국의 반대로 거부되었었으나 재상정된 제안서는 EU의 comitology 규칙에 따라 거의 대부분이 법규로 제정됨
  - EU comitology 규칙에 의하면 첫 번째 제안서는 다수의 찬성이 요구되지만 재상정된 제안서는 만장일치에 의해서만 거부할 수 있음

○ 유럽집행위원회는 지난해 반대 이유로 제기되었던 면허체계와 관련된 문제는 반대 이유로 받아 들이 수 없다는 입장을 제안서 첨부하여 제출함

- 집행위원회의 강경한 입장을 일부 회원국이 지지함으로서 제안서가 채택됨

○ 폐자동차가 유해폐기물로 분류될 경우 엄격한 유해폐기물 법규의 적용을 받게됨

- 미처리된 폐자동차가 EU 국경을 넘어갈 경우 보다 엄격한 검사를 통과하여야 함
  - 또한 EU 유해폐기물 법규를 만족하는 특별 면허를 가진 설비에서만 폐자동차 처리가 가능해짐으로써 자동차 업계의 책임이 더욱 커질 전망임

이광원(kwlee@hri.co.kr, 02- 3669- 4310)